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4421
----------	-------

제출연월일 : 2025. 11. 20.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있어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의 결격사유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전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만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도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조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변경승인”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 또는 관광숙박업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⑤ (생략)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⑥ ----- ----- ----- <u>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조를</u> ---- -.
⑦ ~ ⑩ (생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①·② (생략)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u>변경승인</u> 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 ----- ----- <u>승인 또는 변경승인</u> ----- ----- -----.
④ <u>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u>	④ <u>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 또는 관광숙박업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u> ----- ----- -----.

⑤ ~ ⑩ (생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	----------------